

# 국 무 조 정 실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77/8 ☎ (02)736-8560 FAX)736-8562  
 안전관리대책기획단 기획총괄팀장 배영준 사무관 강동기

문서번호 국무총괄 14000 - 115  
 시행일자 2000 . 3. 27 (년)  
 받 음 수신처 참조  
 참 조

추진상황 정기점검!

보존기간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
공개여부		최재욱	[Signature]
조정관	김병호		
부단장	이명수	기획심의관	[Signature]
팀 장	[Signature]	총무과장	[Signature]
기안자	[Signature]		
심사자	김강진	심사일	2000.3.27.

**제 목 국가안전관리종합대책 「우선추진과제」 시행계획 송부(국무총리지시 제13호)**

1. 최근 인천 노래방 화재등 대형사고로 안전문제가 국가적 관심사로 대두함에 따라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국무총리 소속하에 민관합동 「안전관리대책기획단」을 설치, 안전의식 강화의 일대 전기가 되도록 「국가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개선이 시급하고, 비교적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 「우선추진과제」 시행계획을 마련, 별첨과 같이 송부하니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계부처 장관께서는 동계획 추진을 계기로 위와 같은 대형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평소 일상적인 안전관리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국가안전관리 종합대책 「우선추진과제」 시행계획 1부. 끝

# 국 무 총 리

200  
1  
13

# 國家安全管理綜合對策 「優先推進課題」 施行計劃

## 目 次

I. 推進背景	2
II. 推進經緯 및 推進方向	2
III. 分野別 細部內容	3
<安全事故 豫防 및 安全制度 早期整備>	3
1. 다중이용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행자부, 건교부, 산자부)	
2. 화재보험 제도의 활성화(재경부, 금감원, 행자부, 건교부)	
3. 재난위험 공공 시설물 우선 보수 보강(행자부)	
4. 노후위험 주택 등 재건축 활성화(행자부, 건교부)	
5. 건설사업 투명성 제고(건교부)	
6. 취약 LPG 시설개선 시범사업 추진(산자부)	
7. 노후·불량 전기설비 개수사업 추진(산자부)	
<道路交通安全 시스템의 先進化>	18
1. 교통사고 처리유형의 세분화 투명화(경찰청)	
2. 자동차보험료 할인 할증폭 확대(금감원)	
3. 안전벨트 착용율을 80%로 상향(경찰청)	
4. 통행질서 확립을 위한 노면표시 설치(경찰청)	
5. 대형승합차 안전도 개선(건교부)	
6. 우수한 교통안전 신제품 사용 촉진(건교부, 경찰청)	
<市民 安全運動 推進 活性化>	30
1. 「월드컵 교통신화 만들기」 운동 전개(국무조정실, 행자부, 노동부)	
2. 「생활안전 자원봉사자」 활동 촉진(행자부, 교육부)	
3. 학교 안전교육의 체계적 실시(행자·교육·건교·노동부)	
<安全管理 推進體系 確立>	38
1. 안전관리 총괄조정 부서 설치(국무조정실)	
2. 의무소방대 설치운영(행자부, 국방부)	
3. 안전관리 기관평가 인센티브제 활성화(행자부)	
4. 재난관련 각종 긴급신고전화 일원화(행자부, 산자부, 환경부)	
5. 재난관련 상황실 통합운영(행자부)	
IV. 行政事項	47

## I. 推進背景

- 최근 인천 노래방 화재('99.10.30) 등 대형사고로 국민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안전문제가 국가적 관심사로 대두
  - 대통령께서 「안전의식 강화의 전기가 되도록 종합대책 마련」 을 지시('99.11.2)
- 이에따라 국무총리 소속하에 민·관합동 「안전관리대책기획단」 을 설치하여 한시적으로 운영중('99.12.1~2000.5.31)
  - 단장(황용주 충남발전연구원장), 부단장(자치행정심의관 겸임) 외 27명(17개 부처기관, 공무원 18· 민간전문가 9)
  - 자문위원 : 서울산업대 정재희 교수 등 전문가 12명

## II. 推進經緯 및 推進方向

- 그동안 5차례의 자문회의를 통하여 업무범위 설정 및 내용검토, 화재등 대형사고 방지와 시설안전등 인위재난분야 중심의 「종합대책(안) 시안」 을 수립중
  - 향후 공청회 개최, 관계부처 업무협의를 거쳐 대통령 보고후 시행 예정(5월초)
- 이와 관련하여 개선이 시급하고, 비교적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 「우선추진과제」 를 발굴, 자문회의 및 관계부처 업무협의를 거쳐 「개선안」 마련
- 모든 대책안은 ①작은정부 지향, ②시장경제원리 도입, ③현장 중심 등 3대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추진
- 안전관련 제도개선 등 정책 업무는 중앙에서 추진하고, 집행기능은 최대한 지자체나 민간에 위임·위탁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자체장과 지역주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계기로 활용

### Ⅲ. 分野別 細部內容

#### <大型事故 豫防 및 安全制度 早期整備>

#### 1. 多衆利用 脆弱施設 安全管理 強化(행자부, 建교부, 산자부)

- 다중이용 취약시설에 대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시설은 상반기중 시정조치 완료
- 취약시설에 대한 소방·가스·전기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화성 씨랜드, 인천 호프집 화재와 같은 대형 사고 근절

#### □ 現況 및 問題點

- 인천 화재사고('99. 10. 30)와 관련,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합동으로 전국 노래방·주점 등 다중이용시설(388,702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99. 11 ~ 2000. 2)
- 이중, 14.7%인 57,232개소에서 74,815 건의 위험요소 적발
  - 시설별로는 사회복지시설·주점·노래방 등의 위험요소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분야별로는 소방관련사항이 과반을 차지

	합 계	노래방	단란주점	음식점	관람집회	사회복지
· 점검대상	388,702	26,703	36,274	312,302	8,880	4,543
· 지적업소	57,232	7,132	10,860	35,811	1,640	1,780
(%)	(14.7)	(26.7)	(29.9)	(11.4)	(18.4)	(39.2)

\* 분야별 지적건수가 소방 37,303(50%), 가스 12,474(17%), 전기·기계 10,449(14%) 시설유지관리 9,373(13%) 등의 순임

- 특히, 인천 화재사고와 같이 화재시 유독한 가스가 발생하여 피해가 극심해질 우려가 있는 우레탄·스티로폼 등 자재로 치장한 업소도 242개소 적발(주점 108, 노래방 81개소 등)

## □ 改善方向

- 적발된 화재취약시설에 대하여서는 상반기 중 시정완료
  - 경미한 사안은 즉시 시정등 최단기간내 시정
  - 시정에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시정완료시까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조속한 시정조치 독려
- 안전관리 취약 업소에 대한 지속적 추적관리 실시
  - 지난 점검에서 안전관리 불량이 지적된 대상에 대하여서는 상반기중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재점검 실시
  - 상습적으로 안전관리를 위반하는 업주에 대하여는 관계자 고발, 영입장 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 시행
- 다중이용 취약시설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안전관리체계 구축
  - 노후·취약시설에 대한 건축·소방·전기·가스등 각 분야별 합동점검을 주기적으로 추진

## □ 部處 措置事項

- 각 시·도에 점검결과 불량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독려
  - 기관별로 지자체의 이행실적을 점검·조속 시정 촉구
- 안전관리 취약업소에 대한 추적관리 지침 시행(행자부)
- 관계부처 합동 안전관리체계 구축(행자부·건교부·산자부)

## 2. 火災保險 制度의 活性化(재경부, 금감원, 행자부, 건교부)

- 소방안전에 시장논리를 적용하여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보험제도의 활성화 필요
- 자기시설의 안전을 스스로 책임지는 시민의식을 조성하고 사고 발생시 부당한 공적 부담 경감 등

### □ 現況 및 問題點

- 매년 건축물의 화재발생이 1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심각
  - '99년의 경우 3만3천여건의 화재가 발생, 2,370명의 인명피해 및 1,600여억원의 재산피해 초래
- 시설소유자의 자구적 안전대책인 화재보험가입이 저조하여 사고 발생시 행정기관 등에 무리한 보상 요구
  - 전체 건축물 중 화재보험 가입율이 5%에 불과
  - 대형 사고의 경우 피해자는 행정기관의 책임을 강조하여 무리한 금전적 요구 사례 빈발
    - \* 씨랜드 화재 : 55억원, 인천호프집 화재 : 91억원
- 보험사의 전근대적 영업관행으로 과도한 이익 발생 및 소유자의 자율 안전관리 유도 미흡
  - '94~'98년간 보험의무대상 특수건축물의 보험지급액은 징수한 보험료의 30~40%에 불과(일반건축물의 경우 50% 수준)

## □ 改善方向

- 소방안전에 시장논리를 활용하여 자율적 안전관리를 강화
- 이를 위하여 화재보험시장의 확충방안 강구
  - 화재사고시의 보상한도를 현실화
    - \* 현재는 사망사고시 최고 3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6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 보험가입자에 대한 소방점검의 축소
  - 보험가입 물건에 대하여 금융기관 담보능력 상향인정, 국민 주택기금 대출 차등화 등 강력한 인센티브 부여
- 아울러 보험이 제대로의 시장기능을 발휘토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보장성 보험에 저축성 개념을 도입
  - 안전관리가 우수한 무사고 시설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환급
  - 안전등급평정에 의한 보험료 차등적용의 제도화
  - 화재보험 운영으로 인한 수익은 소방·방재기술 개발 등 공적분야에 적극 투자
- 중·장기적으로 공적 재난보험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
  - 공단설립, 소급율 제도 도입, 지자체의 가입 주체화 등

## □ 部處 措置事項

### ○ 화재보험 시장의 확충

- 화재보험의 보장범위 확대 등을 위하여 화재보험 관련법령을 개정 (재경부, 2000 하반기)
- 소방점검축소를 위한 소방법시행규칙 개정(행자부, 2000. 6)
- 보험가입 물건의 담보능력 상향 인정 유도(금감원, 2000. 6)
- 국민주택기금 대출시 담보능력 차등화(건교부, 2000. 6)

### ○ 화재보험 시장기능의 보완

- 합리적인 요율 결정, 안전등급 평정에 의한 보험료 차등제 및 보험료 환급제 실시(금감원·보험개발원, 2000 하반기)
- 소방·방재 기술개발 투자 및 교육 확대(화재보험협회, 2001)

### ○ 재난보험제도 도입방안 연구(행자부, 2000 하반기)

- 재난관리법 개정 또는 별도 법령 제정

### 3. 災難危險 公共 施設物 優先 補修・補強(행자부)

- 전국에 산재된 교량 등 재난위험 공공시설 510개소에 대하여 보수·보강 및 재시공 등 조치
- 근본적·항구적으로 붕괴 등 위험요인 해소

#### □ 現況 및 問題點

- 재난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공공 시설물 총 9,318개소 중 510개소가 재난 위험이 있는 것으로 점검
  - D급(긴급보수·보강대상) : 478개소
  - E급(사용금지·철거대상) : 32개소
  - \* 교량 : 487개소(95%), 터널 : 3개소
- 이에 대한 조기 보수·보강, 재 가설 등 조치는 재원부족 등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실정
  - 재난 위험시설은 주로 농·어촌도로, 지방도에 위치
  - 보수·보강 및 재 가설 등에 소요되는 총 예산 추정액은 8,336억원이나 현재까지 2,464억원(30%)만 투자
- 시설물 관리청은 재난위험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 통행차량 제한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재 가설 등 근본적 대책 없이는 사고위험이 상존

## □ 改善方向

- 재난위험 공공시설에 대하여 2001년까지 보수·보강 또는 재가설 등을 조기 추진
  - 2000년의 경우 E급 32개소 중 21개소 및 D급 중 사용량이 많은 320개소에 대하여 긴급 보수·보강 및 재가설(2,931억원)
  - 2001년의 경우 잔여 D, E급 위험시설 전부에 대한 사업예산을 최우선적으로 계상(2,941억원)
- 보수·보강, 재가설 등 조치전까지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
  - 계측장비 등을 활용하여 과학적 안전관리 시행
  -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를 정보화 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 □ 部處 措置事項

- 공공재난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 보수·보강, 재가설 실시
  - 2000년 사업대상 조사확정 (행자부, 2000. 4)
  - 예산확보 (행자부·기획예산처, 2000. 6)
    - \* 금년 기정예산 1,972억원외에 추가로 959억원을 추경 또는 예비비로 확보
    - \* 양여금 지원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검토
  - 설계 및 사업시행 (관리청, 2000 하반기)
-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위험시설에 대한 전산관리 체제를 구축(행자부, 2000 말)

#### 4. 老朽危險 住宅 等 再建築 活性化(행자부, 건교부)

- 노후불량 공동주택 등 민간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재건축·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및 규제완화 방안 강구
- 재건축 활성화를 통하여 대형 사고방지 및 주거문화 향상

##### □ 現況 및 問題點

- 재난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건축물 총 47,869개소 중 691개소가 재난위험이 있는 것으로 점검
  - D급(긴급보수·보강대상) : 632개소
  - E급(사용금지·철거대상) : 59개소
  - \* 공동주택 : 516동 (D급 496동·E급 20동, 18,126호)
- 이에 대한 조기 보수·보강, 사용금지·철거 등 조치는 영세입주민의 자금조달 능력 부족, 토지이용 규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 改善方向

- 공동주택 등 민간시설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가스·전기 개·보수 사업 실시 및 재건축 촉진 지원
  - 대상 691개동 중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209동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진단비용을 지원하여 조기진단 실시
  - 국민주택기금에서 노후위험주택 지원자금을 확보, 장기 저리 융자
  - 소규모 주택단지 등 재건축 경제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건축법령상 적용의 특례를 인정하여 용적률 등 혜택부여

- 보수·보강 재건축 등 조치전까지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사용제한 등 조치
  - 중점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효율화
    - \* 재난관리법과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중복점검 일원화
    - \* 시설물 상태평가의 기준치를 확보하기 위한 초기점검제 도입 등

## □ 部處 措置事項

- 재난위험 민간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안전진단 기관에 의뢰 실시
  - 안전진단 실시(시·도, 2000. 6)
    - \* 향후 국고지원 비율을 현행 40% → 60%로 상향조정 방안 검토
- 민간 재난위험시설 재건축 지원 추진
  - 국민주택기금 운영계획 변경(건교부, 2000. 6)
    - \* 2000년 국민주택기금 운영계획에서 노후위험주택 지원자금 확보
  - 건축허가(주택사업승인)시 위험시설에 대한 적용특례 인정을 위한 행정 지도(건교부, 2000. 6)
-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안전점검 일원화를 위한 「재난관리 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 개정(행자부, 2000. 6)
    -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대상시설물은 동법에 의한 점검으로 「재난관리법」상 점검을 갈음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 초기 점검제도 도입 (건교부, 2000 상반기)

## 5. 建設事業 透明性 提高(건교부)

- 실명제, 하도급 개선 및 정보화를 통하여 건설사업 시스템을 선진화·투명화
- 관계자의 책임의식 고취 및 견실 시공을 유도하고 불합리한 간접비용을 배제

### □ 現況 및 問題點

- 건설공사 부실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시설물 수명단축은 물론 붕괴 등 대형사고 위험 상존
  - 부실 적발건수는 감소 추세이나('98. 410건 → '99. 224건) 선진국 수준에는 크게 미흡
  - 시설물의 사고 발생시에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초래
    - \* '94 성수대교 붕괴시 32명사망, 4천억원이상의 물적피해 발생
- 전근대적인 불투명한 건설사업 시스템하에서는 부실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불가능
  - 사업관계자의 실명이 은폐되어 무책임한 사업풍토 만연
  - 하도급 위주 사업수행으로 관리비용만 증대되고 저가 재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
  - 건설사업 관리의 정보화 미흡으로 비용, 품질·공정 등이 불투명
- 정부에서는 그 동안 7차례에 걸쳐 대책을 추진하였으나, 감리 등 직접적인 규제조치 등에 치중하여 실효성 의문시

## □ 改善方向

- 건설사업 실명제 실시
  - 실제 사업에 참여한 설계·시공·감리업체 및 감독공무원 등 관계자 전원에 대하여 「실명제」 도입
- 주계약자형 공동 도급제도 도입
  - 민간공사를 대상으로 일반·전문업체가 공동 도급할 수 있도록 하여 하도급에 따르는 병폐를 해소
- 건설정보화 체계 조기구축
  - 건설공사에 관련된 제반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정보망(건설CALS)을 조기에 구축
  - 이를 위하여 입찰·계약분야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

## □ 部處 措置事項

- 건설사업 실명제 제도화(건교부, 2000. 6)
- 주계약자형 공동 도급제도 도입(건교부, 2000. 6)
- 건설CALS 시범사업 실시(건교부, 2000. 6)
  - 설계 등 기술용역과 건교부 산하투자기관 발주공사를 포함하는 공공사업 전반에 걸친 「입찰·계약 전자조달 체계」 구축 등

## 6. 脆弱 LPG 施設の 示範 改善事業 推進(산자부)

- 재래시장, 노후·불량주택 등 취약 LPG 사용시설의 지자체·사업자·사용자 공동 시설개선사업 시행
- 체적거래 조기 정착으로 가스사고 감소 유도

### □ 現況 및 問題點

- 가스사고는 대부분 LPG(액화석유가스) 관련 사고로서 그 원인은 주로 사용자 취급부주의, 시설미비에 기인
  - 최근 5년간 가스사고현황 : LPG 1,454건(64.5%), 도시가스 695건(30.9%), 일반가스 102건(4.6%)
  - 원인별 현황 : 취급부주의 384건(17%), 시설미비 548건(24.3%)
- 특히 재래시장,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달동네)등은 개별 LPG용기, 고무호스 등 노후된 시설로 대형 가스사고 발생 우려
  - '99년말 현재 20년이상 경과한 재래시장은 전국 380개소로 시장당 LPG사용 점포는 평균 20~30개로 추정
  - 재래시장 518개소 중 12개소(2.3%)만 체적거래로 전환

### □ 改善方向

- 재래시장, 노후·불량주택의 가스시설상황 조사
  - 지자체 및 가스안전공사 공동 조사단 구성

- 조사결과, 취약시설은 지자체·공급자(가스판매자)·사용자 및 가스 안전공사 합동으로 가스안전 시범사업 시행
  - 개별용기공급 방식을 중앙공급 방식으로 전환하여 소형저장 탱크 또는 대형용기 집합시설 설치 및 공동이용
  - 고무호스를 금속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누설경보차단장치 등 안전 장치와 개별계량기 설치로 안전성 강화

## □ 部處 措置事項

- 가스안전 시범사업의 추진(산자부, 시·도, 가스안전공사)
  - 취약시설 조사 및 시범사업 대상 선정(2000. 5)
  - 시범사업 시행(2000. 6~8)
-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보완 추진(산자부, 2000 하반기)
  - 관련 법령의 보완 및 자금 지원 등
- 사업비용은 가스시설 소유자가 부담하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등에서 지원(산자부)
  - 공급자는 저장시설→계량기, 사용자는 계량기후단→연소기의 시설비용 부담
    - \* 재래시장 1개소당 약 5,000~7,000만원, 점포당 월 8,000원 정도 추정

## 7. 老朽・不良 電氣設備 改修事業 推進(산자부)

- 노후・불량 전기설비에 대하여 관계기관이 직접 개수사업을 시행
- 전기합선 등으로 인한 화재사고를 대폭 감소

### □ 現況 및 問題點

- 매년 화재 등 전기사고로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 '99년도 전기화재는 11,204건(총 화재의 33.1%)으로서, 사상자 450명, 재산피해 576억원 발생
- 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결과, 부적합 설비에 대한 개선이행 미흡
  - '99년도 점검대상 714만호 중 부적합설비는 26만호(3.6%)로서, 부적합 설비중 개선조치 미이행이 8만호(30%)에 달함
    - \* 부적합 전기설비 개선 지연은 전기화재 발생의 취약요인 임

### □ 改善方向

- 노후・불량 전기설비 시범 개・보수사업의 추진
  -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노후・불량 전기설비에 대해 직접 개선 추진
- 시범개수사업은 전기안전공사・전기공사협회 공동 추진
  - 전기안전공사 : 점검업무 수행 및 부적합 수용가 명단 통지 등 사후관리
  - 전기공사협회 : 적정 공사업체를 지정 개・보수 공사 시행

## □ 部處 措置事項

- 「전기설비 개·보수센터」의 설치(2000. 6)
  - 설치기관 : 전기안전공사 및 전기공사협회
  - 개수대상 조사 및 개수비용 정산 등 시행계획 수립
  
- 부적합 전기설비의 시범 개·보수사업 추진(2000. 8)
  
-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 보완 추진(산자부, 2000 하반기)
  - 노후·불량 전기설비 개·보수사업의 절차와 기준 마련 등

## <道路交通安全 시스템의 先進化>

### 1. 交通事故 處理類型的 細分化・透明化(경찰청)

- 경찰서 운용 9개 사고유형도면을 30~40개로 확대하여 사고처리를 투명화(전체사고의 80% 이상 포함)
- 사고처리를 투명화하여 운전자간 교통사고 분쟁을 방지

#### □ 現況 및 問題點

-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발생시 가·피해자 구분이 불명확하여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운전자들이 도로를 점유하고 교통경찰이 올 때까지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많음
- 현재 각 경찰서에 9개 사고유형에 관한 가·피해자 구분 도면을 제작·비치하고 있으나, 전체사고유형을 포함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전체사고의 약 40% 포함)

#### □ 改善對策

-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운전자간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현재 9개 사고유형에 대하여 운용하고 있는 경찰청의 가·피해자 구분도면을 30~40개 사고유형으로 확대
  - 경찰청은 운전자간의 시비가 많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유형을 분석하여 사고유형도면을 확대
  - 향후 전체사고의 약 80%가 포함되도록 확대

- 사고유형도면이 완성되면 소형 포켓북 형식으로 제작하여 손보험회를 통하여 전체 운전자에게 배포하고(항시 차내 사물함에 비치), TV, 라디오를 통한 홍보 실시
  - 운전면허시험에서 통행권에 관한 내용을 최우선적으로 중점 출제
  - 교통사고 발생시 현장다툼 대신 당사자간에 포켓북을 참조하여 협의후 보험회사에 통보처리하는 문화 정착
- 법적으로 가·피해자 구분을 명확히 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쌍방과실 적용을 축소(보험회사, 법원)
- 교통사고 처리의 투명화 및 질서정착을 통하여 연간 차대차 사고('98년 158,732건, 전체의 66.2%)의 20~30% 감소 기대

## □ 部處 措置事項

- 교통사고 발생유형 분석, 가·피해자 구분을 위한 사고유형 도면을 30~40개로 확대(경찰청)
- 사고유형 포켓북 제작·배포, 운전자 홍보 실시(손보험회)

## ※ 추진일정

- 2000. 4~5 : 사고유형도면 확정(경찰청)
- 2000. 6 : 포켓북 제작·배포, 홍보실시(손보험회)
- 2000. 7부터 : 통행우선권 현장적용 시작

## 2. 自動車保險料 割引・割増幅 및 方法 改善(금감원)

- 우수한전자에게 보험료 할인폭을 확대하고, 사고 많은 자에게 할증폭을 확대하며, 할인·할증 적용 항목 및 기준을 개선
-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 하도록 유도하여 연간 교통사고 10~20% 감소

### □ 現況 및 問題點

- 자동차보험료는 정부예산투자 없이 시장원리에 의거해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
  - \* 선진국의 경우 경찰 범칙금보다 보험료 할증 및 보험가입 거부가 두려워서 법규위반 자제 및 안전운전 실천
-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한전자에게는 보험료를 더 할인해주고, 사고 많은 자에게는 더 할증하는 대책 시행 필요

### □ 改善對策

- 사고를 내지 않는 우수한전자에게는 최고할인폭을 현행 60%에서 추가로 확대
  - 현행 할인방법 : 100%→90%→80%→70%→60%→50%→45%→40%(7년간 할인)
  - 개선방안(예시) : 40%이후 계속 할인(40%→38%→36%→34%→33%→32%→31%→30%)(7년간 추가 할인)

- 사고를 많이 내는 운전자에게는 보험료 할증폭을 현행 150%에서 추가로 확대
  - 현행 할인방법 : 사고내용 할증 100%, 사고원인 할증 50%, 합계 최고 150% 할증
  - 개선방안(예시) : 사고내용 및 사고원인에 따라 3년간 최고 200% 까지 할증
  
-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보험료의 할인·할증 대상항목 및 기준을 종합적으로 개선
  - 교통사고를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 운전자에 대한 신상필벌 제도 확립을 통해 안전운전을 유도하여 연간 교통사고를 10~20% 감소

## □ 部處 措置事項

- 보험료 할인·할증 관련 보험요율서 개정 (금감원)

### ※ 추진일정

- 2000. 4~5 : 할인·할증폭 관련 개선방안 마련(금감원)
- 2000. 6~8 : 개선방안 공고 및 운전자 홍보
- 2000. 9 : 개선방안 시행(법규위반자 보험료 할증과 동시 시행)

### 3. 安全벨트 着用率을 80%로 上向(경찰청)

-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미착용자보다 사망률이 31% 감소함에도 안전벨트 착용율은 평균 20% 수준에 불과
- 홍보와 단속을 통해 안전벨트 착용율을 80%로 상향시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1,300명 이상 감소

#### □ 現況 및 問題點

-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교통사고 발생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미착용자보다 사망률이 31% 정도 낮아짐(안전벨트 착용자의 치사율 11%, 미착용자의 치사율 16%)
  - \* 미국 통계에 의하면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승차자 사망률이 45% 감소 (National Safety Council 자료)
- 전국의 안전벨트 착용율은 1999년 현재 평균 20%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
  - \* 1999. 6월, 전국 25개도시 18,500명 조사, 교통안전공단, 녹색교통운동
  - 1991년 안전벨트 착용법규 최초도입 및 단속실시 직후 안전벨트 착용율은 83% 수준
    - \* 선진국 안전벨트 착용율 : 스웨덴 95%, 호주 94%, 일본 77%, 미국 67%

## □ 改善對策

-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하여 안전벨트 착용율 향상을 위한 대국민 홍보 실시
- 일정기간 홍보후 미착용자에 대한 경찰의 단속강화를 통하여 안전벨트 착용율을 80%로 상향시킴
- 안전벨트 착용율 80% 도달시 연간 차대차 사망자(3,788명) 및 차량 단독 사망자(1,855명)중 약 1,300명 이상 사망자 감소 가능
  - \* 안전벨트 미착용 사망자의 31%가 생존한다고 가정
- 1999년 교통사고 사망자수 9,353명 → 2000년 8,000명 목표달성 가능

## □ 部處 措置事項

- 안전벨트 착용율 향상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단속 실시 (경찰청)

### ※ 추진일정

- 2000. 4 : 안전벨트 착용대책 확정(경찰청)
- 2000. 5~6 : 안전벨트 착용 홍보실시
- 2000. 7부터 : 경찰단속 실시

#### 4. 通行秩序 確立을 위한 路面標示 設置(경찰청)

- 차량간의 통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모든 교차로에 “정지” 또는 “양보” 노면표시 설치(“페인트 작전” 실시)
- 도시내 이면도로의 차대차 사고를 20~30% 감소

#### □ 現況 및 問題點

- 우리나라는 신호등이 없는 대부분의 지방도로 및 도시내 이면도로 교차로에 통행권 확립을 위한 안전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를 유발
  - \*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모든 교차로에 “정지” 또는 “양보” 표지가 설치되어 있어 통행 질서를 확립
-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통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지 및 양보 표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改善對策

-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모든 지방도로 및 도시내 이면도로의 교차로에는 정지선을 설치하고 노면에 “정지” 또는 “양보” 글씨를 써넣어 통행권을 명시하는 “페인트 작전”을 실시
  - \* 일본의 “페인트 작전”
    - 일본은 1970년대 초반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가 높은 노면표시 설치를 “페인트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교통사고를 크게 감소
    - 모든 중소 교차로에 정지선을 설치하고 정지선 앞에 “とまれ” 표시

- 교차로외에 차량과 차량이 만나는 모든 합류지점에는 한쪽 방향에 정지선을 설치하고 노면에 “정지” 또는 “양보” 글씨를 써넣어 차량간의 통행권을 명시함
- 보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모든 이면도로에는 보행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하는 분리 페인트선을 설치
  - \* 일본의 이면도로는 “페인트 작전”의 결과로 아무리 좁은 도로라도 보행자와 차량을 분리하는 분리선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
- “페인트 작전”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차량간의 통행질서를 명시하고 교통사고 감소 가능
  - 본 사업은 월드컵 대비 이면도로 환경정비를 겸한 사업으로 추진

## □ 部處 措置事項

- 서울지방경찰청 관내 1개 동 선정 “페인트 작전” 시범사업 실시, 효과분석후 확대여부 결정(경찰청)

### ※ 추진일정

- 2000. 12까지 : 시범사업 실시(서울지방경찰청 관내 1개 동 대상)
- 2001. 12까지 : 시범사업 효과분석, 확대여부 결정

## 5. 大型乗合車 安全度 改善(건교부)

- 많은 승객이 탑승하는 대형승합차에 대하여 천정강도 기준, 및 제동장치 기준 등 안전기준을 강화
- 안전기준을 개선하여 대형승합차 사고발생시 피해규모를 최소화

### □ 現況 및 問題點

- 대형승합차는 많은 승객을 운송하므로 안전도에 대하여 일반차량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요구
- 현행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총 41가지 시험항목을 정하고 있으나 주로 승용차에 관한 것이고, 승합차(특히 대형승합차)에 대한 항목은 매우 취약
- 특히, 동적 전복시험은 승용자동차에 국한되어 있고, 천정강도는 승용차를 대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승합차의 제동장치도 승용차와 공통된 측정 기준이 적용

### □ 改善對策

- 대형승합차의 안전도 개선을 위하여 4개 기준항목 (충돌시험, 전복 또는 천정강도 시험, 제동시험, 최소회전시험)에 관하여 대형교통수단에 맞는 조항을 신설 및 보완
- 특히, 대형승합차의 제동장치는 듀얼시스템을 채택토록 하여 일부 제동장치가 파손시에도 여분의 장치가 뒷바퀴에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 대형승합차의 천정강도는 프레임 및 국내 차량에 사용되는 철판의 두께에 대한 기준이 우선적으로 설정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 대형승합차의 안전도 개선을 통하여 승합차에 의한 연간 사망자수 364명의 20~30% 감소 기대

#### □ 部處 措置事項

- 대형승합차 안전기준 개선방안 검토,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건교부, 2000. 12까지)

## 6. 優秀한 交通安全 新製品 使用 促進(건교부·경찰청)

- 정부 공사시 성능이 우수한 교통안전 신제품이 우선적으로 채택·사용될 수 있도록 신제품 공인시험장을 구축하고, 신제품 지정 및 사용절차 개선
- 교통안전 제품의 성능개선을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

### □ 現況 및 問題點

- 최근 우수한 성능을 가진 새로운 교통안전 제품(안개등, 반사재, 방호책 등)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나 다음 사유로 신제품 채택 지연
  - 신제품 성능공인체계 미비로 담당자가 신제품 성능 확인 불가
  - 성능이 확인된 경우라도 관련지침의 개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음
  - 지침이 개정되더라도 기존업체의 반발로 실제 공사에 신제품이 채택 곤란
- 우수한 성능을 가진 새로운 교통안전 신제품의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필요

### □ 改善對策

- 교통안전 신제품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도로안전시설 공인평가시험장을 건설
  - \* 도로안전시설 공인평가시험장의 주요 수행 업무
    - 각종 도로안전시설의 성능평가
    - 외국산 시설의 국내 적합성 평가
    - 신제품의 개발 지원
    - 도로안전시설 유지관리 기법 개발 등

- 교통안전 신제품의 지정 및 사용에 관련된 규정 및 절차를 개선하여 신제품의 채택·사용을 촉진
- 이미 성능이 검증된 제품은 빠른 시일내에 관련지침을 개정하여 공사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
- 우수한 성능을 가진 교통안전 신제품의 사용촉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관련산업을 발전시킴

#### □ 部處 措置事項

- 도로안전시설 평가시험장 구축방안 마련(건교부) 및 우수 교통안전 신제품 사용촉진 방안 마련(건교부, 경찰청)

#### ※ 추진일정

- 2000. 6까지 : 성능 기검증 제품의 관련지침 개정(건교부, 경찰청)
- 2000. 12까지 : 도로안전시설 평가시험장 구축방안 및 신제품 사용 촉진방안 마련(건교부, 경찰청)
- 2001.이후 : 도로안전시설 평가시험장 건설(건교부)

## <市民安全運動 推進 活性化>

### 1. 「월드컵 交通神話 만들기」 運動 展開(국조실, 행사·노동부)

- 「월드컵 交通신화 만들기」 운동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여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에 노력
-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안전제일, 생명존중의 가치관 정립에 기여

### □ 現況 및 問題點

-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1만여명, 부상자수가 34만여명에 달하고 있는 등 교통질서 후진국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사고의 주요 원인도 교통법규 위반 등 안전의식 결여
-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시급

### □ 改善對策

#### 추진방향

-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정부와 언론이 지원하여 범국민적 참여유도
- 교통사고 원인이 되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단계적 실천운동 추진
- 「그릇된 안전의식」, 「잘못된 교통여건」 개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대토론회 개최
- 교통사고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실천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
  - 시민단체와 협의하여 실천과제(예시 : 별첨) 및 추진일정 확정
  - 월드컵 개최 1개지역 시범운영 후 전국 확대 운영

-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TV·언론매체와 연중 캠페인 실시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주체를 구성·운영
  - 현행 안전문화추진본부를 개편·활용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필요인력 파견 지원

#### □ 部處 措置事項

- 교통신화 만들기 운동 추진주체 구성·운영  
(국무조정실·행자부·노동부, 2000.6)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총리훈령 제정

#### ※ 추진일정

-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조직 정비 : 2000. 6
- 1개지역 시범운영 : 2000. 6
- 단계별 실천 세부계획 작성·추진 : 2000. 9 ~ 12
- 전국확대운영 : 2001. 1 ~

## 『월드컵 交通神話 만들기』運動 推進內容(예시)

- (1) 통행우선권 지키기
  - 운전자간 사고예방을 위해 차량통행 우선권에 선진국형 양보 규칙을 도입·확산하고 보행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보행권 찾기 운동 전개
- (2) 운전자와 보행자간에 3가지 약속 지키기
  - 보행자의 『건널목 바로 건너기』
  - 보행자와 운전자간에 『미소로 신호하기』
  - 운전자의 『하루 10번 양보하기』
- (3) 편안한 출·퇴근길 만들기
  - 『카풀제』 등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개발·추진
  - 대중교통수단의 친절도, 운행성적 등 안전지수 평가제도 시행
  - 10부제 등 차량운행 제한에 시민참여 동기 부여
- (4) 불합리한 교통여건의 개선
  - 신호체계나 불합리한 도로상황 등 불가피한 교통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통여건 개선
  - 국민 제안제도를 시행하여 우선순위별로 개선
- (5) 교통안전 교육의 내실화
  - 학생·주부·운전자 등 계층별 안전교육 강화
  - 대도시 지역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확대

「월드컵 交通神話 만들기」運動 展開 관련

□ 改善對策(案)

- 「그릇된 안전의식」, 「잘못된 교통여건」 개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대토론회 개최
- 교통사고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실천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
  - 시민단체와 협의하여 실천과제(예시 : 별첨) 및 추진일정 확정
  - 월드컵 개최 1개지역 시범운영 후 전국 확대 운영
-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TV·언론매체와 연중 캠페인 실시

□ 警察廳 見解

- 국무조정실(심사평가조정관실)에서 「사회질서 확립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질서 확립과제와 중복

과제	내용	주관부처	참여단체
교통질서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호위반·교차로 통과 위반 단속</li> <li>○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li> </ul>	경찰청	교통안전관리공단, 녹색어머니회, 안실련 등

- 개선대책(안) 별도 추진시 업무중복으로 행정력 낭비 우려

□ 檢討意見

-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통질서 확립」 과제는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에 국한되어 있어 「그릇된 안전의식」, 「잘못된 교통여건」 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기획단(안)과 상이

## 2. 「生活安全 自願奉仕者」活動 促進(행자부, 교육부, 시민단체)

- 국민의 안전의식을 선도할 지역별 의식개혁 엘리트를 집중 육성하여 안전봉사 활동을 촉진
- 안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여 「사고없는 사회」 조성

### □ 現況 및 問題點

-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등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선발·활용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
-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촉진할 유인수단이 없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꺼리고 있는 경향
  - 일반시민의 안전의식을 선도할 의식개혁 엘리트로서의 자질과 역할 부족

### □ 改善對策

- 지역별 자원봉사자 육성·운영
  - 시·군·구별 500명씩 총 10만 자원봉사자 육성
  - 자원봉사자에 대해 기본교육 실시 후 위촉장 수여
  - 자원봉사자 은행제 시행
- 시민 안전지킴이 활동 확대
  - 교통안전 등 각분야의 안전수칙 위반, 생활주변 위험요소에 대한 신고 및 계도활동 실시
  - 자원봉사자 1인과 학생 4~5명을 연계시켜 학교주변의 안전확보
  - 재난시에는 긴급 구조활동 참여(전문분야 기능보유자) 및 기타 봉사활동 실시

- 봉사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금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
  -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제도 마련
  - 자질향상을 위해 지속적 전문교육실시, 교육자료 등 정보제공

□ 部處 措置事項

-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행자부·교육부, 2000.6)
  - 자원봉사 활동 지원(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제도 마련(2000년 상반기)
  - 학생 봉사활동시간 인정(교육부)
- 가칭 “시민안전단체총연합”발족(시민단체)

※ 추진일정(시민단체 주관)

- 시민안전단체 총연합회 발족 : 2000. 6
- 자원봉사자 발대식 : 2000. 7
- 분위기 조성 : 2000. 6 ~ 12
- 전국적인 활동전개 : 2001. 1 ~

### 3. 學校 安全教育의 體系的 實施(행자·교육·건교·산자·노동부)

- 안전의식을 조기에 체질화·생활화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별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
- 조기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기초질서 준수 풍토 조성

#### □ 現況 및 問題點

-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로 인해 일선학교에서의 안전에 대한 이해와 교사들의 안전지식 부족으로 분야별 안전교육에 소홀
- 안전의식을 조기에 체질화·생활화하기 위해 유치원 취학전 어린이로부터 초·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안전교육 필요

#### □ 改善對策

- 초·중·고등학교의 특별·재량활동 시간을 안전교육시간으로 활용하여 안전교육 강화
- 각 시·도 교육청별 안전교육 시범학교를 확대 지정하여 안전교육의 거점으로 육성·발전
  - 안전분야별(산업안전, 전기, 가스, 교통 등)유관기관에서 시범학교 운영 지원
- 초등학교별로 어머니 안전 명예교사 양성·활용
- 안전교육자료 및 교사용 지침서 개발·보급

- 학교별 『안전교육 담당 교사제』 시행
  - 교통안전 담당교사를 겸임지정
  - 안전교육 담당교사를 위한 안전교육 연수과정 운영 확대
  - 안전교육전문기관에 연수과정 운영 확대

## □ 部處 措置事項

- 각 시·도 교육청별 안전교육 시범학교 확대 지정  
(행자부, 교육부, 건교부, 산자부, 노동부)
  - 안전분야별(산업안전, 전기, 가스, 교통 등)유관기관에서 시범학교 운영 지원 : 2001 상반기
    - \* 노동부(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는 '96년부터 시범학교 지원중
- 초등학교별로 어머니 안전 명예교사 양성·활용 : 2000 하반기
- 학교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
  - 초·중·고등학교의 특별·재량활동 시간 활용 안전교육 (교육부, 2000. 8)
  - 안전교육자료 및 교사용 지침서 개발·보급 (행자부, 교육부, 건교부, 산자부, 노동부)
  - 학교별 『안전교육 담당 교사제』 시행(교육부, 2000. 8)
    - \* 교통안전 담당교사를 겸임지정

## <安全管理 推進體系 確立>

### 1. 安全管理 總括調整 部署 設置(국무조정실)

- 분산되어 있는 안전관리업무를 총괄·조정
- 재난예방 및 사고대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 □ 現況 및 問題點

- 현행 정부재난관리 업무는 유형별로 수행하고 있어 관리책임이 행자부, 산자부, 건교부, 환경부 등 여러부처에 분산
- 안전관리기능은 건설, 가스, 전기 등 관련부처의 고유업무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종합·조정기능이 필수적이므로 각 부처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
- 국무조정실 「자치행정심의관실」에서 행자부, 경찰청, 서울특별시 소관업무 현황과약 및 조정업무와 함께 안전관리 총괄기능 수행
  - 「자치행정심의관실」의 안전관리 담당인원은 서기관 1명, 사무관 1명으로서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각종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기에는 무리

#### □ 改善對策 및 部處 措置事項

- 국무조정실내에 「안전관리심의관」 설치
  - \* 현정원 범위내에서 조정

## 2. 義務消防隊 設置運營(行政自治部, 國防部)

-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소방서에 설치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소방인력으로 활용
- 소방력 확충과 현장대응 능력 강화 및 현재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로 전환이 가능하여 소방공무원 사기 진작

### □ 現況 및 問題點

- 도시화율이 90%이상되는 주거환경에서 인위재난 발생이 높고 이에 따른 소방수요가 커지고 있으나 적정인력 보장이 미흡
  - 최근 5년간('95-99') 구조78%, 구급44%, 화재6.8%가 증가하였으나 소방인력은 소요인력 28,664명 대비 확보인력은 22,597명으로 6,067명이 부족
  - 전체공무원수 대비 소방공무원의 정원비율이 2.5%로 미국7.4%, 일본3.4%, 프랑스, 5.3%와 비교해서 부족
  - \* 소방공무원 1인당 인구수도 미국의 9.5배, 일본 2.4배, 프랑스 8배 수준

- 소방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과다로 소방공무원 피해 속출
  - \* 사망·부상자 발생 : 97년 212명, 98년 237명, 99년 226명

#### <유관기관과의 근무형태 비교>

구분	소방	경찰		교정	지하철	교환원
		2교대	3교대			
주근무시간	84	84	56	75	42	56
근무방식	24시간2교대	24시간 2교대	12시간 3교대	혼합3교대	8시간3교대	1일3교대
3교대율(%)	0	63.8		100	100	100

- 읍·면 단위 소방출장소(847개소)의 인력부족으로 초기 대응 불가능
  - \* 운전원 1인 근무자 119개소, 소방1인이 365일 근무지 203개소

## □ 改善對策

- 소방업무 보조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소속하에 설치하고 평상시 교육·훈련을 통해 소방인력으로 활용
- 병역법에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전환 복무된 자 중에서 임용
- 대원이 직무 수행중 부상 및 사망한 때에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보상대상자』로 함
- 대원의 기강 및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위하여 군형법에 준하는 벌칙 규정을 규정

## □ 部處 措置事項

- 의무소방대법 제정(행정자치부, 2000. 6)
- 병역법 개정(국방부, 2000. 6)

### 3. 安全管理 機關評價 인센티브制 活性化(행자부)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재난분야 예산·인력·기구를 대폭 감축하는 등 업무추진에 적극성이 결여
-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난관리 업무를 중점평가하여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

#### □ 現況 및 問題點

- 재난관리분야 업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 부족으로 재난 위험시설 해소 등 안전관리대책 미흡
  - 각종 사업예산 편성시 주민의 표를 의식하여 선심성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고
  - 안전관리분야 사업예산은 미미하거나 전무한 실정
- 담당공무원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 애로
  - 일부 시도의 경우 계단위 조직으로 계장 1명, 직원 2명이 재난분야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실정
  - 시군구의 경우 건설(방재)과 등의 계단위 조직의 직원1-2명이 담당
- 현행 제도의 재정인센티브 미약으로 지자체 관심 부족
  - \* 행자부에서 재난업무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더이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98년 - 25억원, '99년 - 10억원, 2000년 - 추진불투명)

## □ 改善方向

-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재난업무 추진 평가를 통한 재정인센티브제 확대 실시
  - 평가대상 : 시도 및 시군구
  - 평가업무 : 재난관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  
(인력·예산·안전점검 등 업무추진실태)
  - 기타 : 수혜대상기관 및 재정지원규모 대폭 확대
    - \* 30개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당 1억이상 지원
-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 확대
  - 업무추진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 실시로 사기양양 및 관심 제고
-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언론홍보 실시
  - 평가결과는 신문·TV 등 중앙 및 지방의 언론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 실시
  - 필요시 재난업무에 대한 관심부족기관도 발표

## □ 部處 措置事項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재원 확보(행자부)
  -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평가기준 등 작성
  - 재정지원규모 확정 및 특별교부세 등으로 예산 확보

#### 4. 災難關聯 各種 緊急申告電話 一元化(행자부, 산자부, 환경부)

- 다양한 긴급신고전화를 112와 119로 구분하여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재난시 긴급대응 능력 강화
- 긴급신고 전화를 범죄관련 112, 긴급 재난관련 119로 구분함으로써 국민들의 신고 편의성 향상과 효과적인 대응력 제고

#### □ 現況 및 問題點

- 각종 사고시 신고하는 긴급전화가 화재·긴급구조(119), 교통사고(112), 응급환자 안내(1339), 가스사고(지역국번-0019), 환경오염(128) 등 부처·기능별로 분산
  - \* 미국(911), 영국(999) 등 선진국은 긴급신고전화가 1-2개로 통합
- 119 상황실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간 Hot Line 구축, 기타 유관기관간에는 별도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 대부분의 국민들은 위급한 상황발생시 어느 곳으로 신고할지 몰라 당황하는 등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신고 및 접수가 늦어져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사고도 대형사고로 확대우려
- 범죄(112), 간첩(113), 밀수(125), 마약(127) 등 범죄관련 신고 전화와 상담용 전화가 난립되어 긴급신고전화 이용에 혼란 초래
- 119 신고 장난전화가 64.0%로 긴급 전화 이용에 불편을 초래

## □ 改善對策

- 각종 재난관련 긴급 신고전화를 119로 통합하고, 범죄관련신고는 112로 추진
  - \* 민원성 전화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
- 재난관련 긴급 신고전화 119의 사고 접수후, 각종 유관기관에 상황 전파를 위한 Hot Line 구축
  - \* 재난관련 유관기관간 전산망 구축 운영
- 119 장난전화 방지대책 강구(벌금을 과태료 부과로 변경)

## □ 部處 措置事項

- 안전관련 긴급신고 일원화 운영(행자부·환경부·한국가스안전공사, 2000. 5)
  - \* 화재 119, 가스 지역번호+0019, 환경오염 128 통합
  - \* 119를 제외한 0019 및 128 번호 폐지
- 민원전화와 긴급신고전화 분리(환경부·산업자원부, 2000. 6)
  - 전기, 가스, 환경오염 등 민원전화와 긴급신고 분리 운영
- 119 장난전화 방지를 위한 과태료 부과
  - \*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태료로 변경
  - \* 소방법 제117조(벌칙) 9호 : 제71조(화재의 통지)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나 관계인에게 화재를 허위로 알린 사람
- 안전관련 긴급신고전화 일원화에 따른 119 종합상황실 운영 계획 강구(행자부, 2000. 5)
  - 119 안전관련 신고 파악 및 처리 인력 확보 방안 강구
  - 상황 전파를 위한 관련 부처간 전산망 및 통신망 구축 방안 강구

## 5. 災難關聯 狀況室 統合運營(행자부, 시도)

- 재난관리법에 의한 종합상황실과 긴급구조본부상황실을 통합 운영
- 중복된 상황실 운영을 통합함으로써 상황 접수 및 보고의 일원화와 행정력 낭비 요소 제거

### □ 現況 및 問題點

- 중앙재해·재난상황실(종합상황실, 민방위방재국 운영, 재난관리법 제16조)과 중앙긴급구조본부상황실(소방상황실, 소방국 운영, 재난관리법 제24조) 등 상황실 중복 운영
  - \* 재해재난상황실 : 정원 9명, 1일 3명 3교대 근무
  - \* 긴급구조본부상황실 : 정원 4명, 1일 3명이 3교대 근무 및 2명 일일 근무 (7명은 시·도본부에서 파견)
- 광역시·도 재해/재난상황실 및 긴급구조본부상황실 중복 운영
  - \* 재해재난상황실 : 정원 6-9명, 3교대 근무
  - \* 지역긴급구조본부상황실 : 시·도별로 필수인원이 부족하여 소방서에서 파견 받아 2교대 운영
  - \* 상황실을 통합·운영하는 시·도 : 대전, 경기, 충남, 경남
- 이원화된 상황실 운영에 따라 불필요한 이중보고
  - \* 부서간 경쟁에 따른 행정력 낭비 초래 및 인력 부족 심각
- 119소방에서 대부분 상황접수 처리(총재난의 97%)
  - \* 재난상황실은 YTN시청 및 소방 무선 청취로 정보 파악

## □ 改善對策

- 긴급구조상황실을 중심으로 재해·재난상황실·당직실 통합 운영
- 3교대 근무 확대실시로 직원 사기진작
  - \* 현재 일반직은 3교대,소방직은 2교대 근무
- 저비용·고효율적인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 효율적인 재난·구조·구급종합상황실 운영체제 구축으로 예산절감 및 행정낭비요소 제거
- 보고체계 일원화 및 신속한 대응 능력 구축
- 소방 상황과 재해재난상황의 발생 빈도 차이로 인한 업무 불균형 보완책 수립 가능

## □ 部處 措置事項

- 행정자치부 직제시행규칙 개정(행정자치부, 2000. 5)
  - 민방위방재국(재난대책과), 소방국(구조구급과) 중 1개과로 상황 관리 업무 일원화
- 상황실 운영 방식 개편(행정자치부, 2000. 5)
  - 상황실 통합 운영에 관한 종합 계획 강구
    - \* 2교대에서 3교대로 변경 추진
    - \* 효율적인 종합상황관리체계 구축 추진

#### IV. 行政事項

- 우선추진과제는 「국가안전관리종합대책(안)」 중에서 추진의 시급성 및 효과성을 감안하여 우선추진하는 것이므로 관계부처에서는 조기 시행 되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산하기관, 시도, 민간단체(기관) 등에 대한 관련 사항은 관계부처에서 추진계획을 수립, 이첩시행
- 본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결과를 아래서식에 의거 2000.4.21까지 제출하기 바람, 추진상 문제점 및 건의사항이 있으면 첨부할 것
  - 향후 매분기별 추진상황도 매분기말 익월 10일한 동서식으로 제출

“보고서식”

### 국가안전관리종합대책 우선추진과제 추진결과보고

#### 1. 추진결과

제 목	개선대책(기획단)	부처 조치사항	비 고
		*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으로 구분작성하되 추진일정을 명기	* 완료, 추진중 등 진행상황 기록

#### 2. 추진상 문제점

#### 3. 건의사항